

'97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의件 審 査 報 告 書

1. 審 査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7.10.23
- 나. 提出者 : 瑞山市長
- 다. 回附日字 : 1997.10.24
- 라. 上程日字 : 1997.11. 1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山林課長 柳栽熙)

가. 提案理由

- 서산지방산업단지(충남도고시 1997-19) 개발사업지구내 편입토지로써, 현대정공주식회사(대표이사 박정인)으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에 의한 서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사업지구내편입 시유입야를 산업 단지용으로 매수신청.

나. 主要骨子

○ 매각대상재산

대상 물건	입 야 소재지	지번	지목	매 각 면 적	재산가액 (추정가액)	매각 방법	매수자	비 고
토지	지곡면 무장리	산 228-1	입야	29,752m'	180,000,000원	수의 계약	현대정 공(주)	실거래 가 격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

-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,
- 지곡면 무장리 산228-1번지 임야가 서산시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내 편입토지로써,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2호에 의거 수익계약매각 하므로써, 시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으로 관리계획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없음

5. 討 論 : 없음

6. 少數意見 : 없음

7. 審査結果 : 원안 가결

제안번호	체 162 호
의결년월일	1997. . . (제 회)

'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견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7. 10. 23

'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견

의안
번호 162

제출년월일 : 1997. 10. 23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제안 사유

서산지방산업단지(충남도고시 1997-19) 개발사업지구내 편입토지 매각

매각대상재산

대상물건	임야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매각면적	재산가격	매각방법	매수자	비고
토 지	지곡면무장리	산228-1	임야	m ² 29,752	m ² 29,752	원 180,000,000	수익계약	현대정공 주식회사	실거래 가격

매 각 사 유

현대정공주식회사(대표이사 박정인)으로부터 산업임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에 의한 서산지방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사업지구내 편입시유임야를 산업단지용으로 매수 신청.

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5호
-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
- 산업임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

처 리 계 획

- 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시행자인 현대정공 주식회사와 실거래가격으로 협의 수익계약

공유재산관리계획서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천원)

구 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 고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 득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1. 매 입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2. 교환으로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3. 기 타 취 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취 분	계	토지 건물 기타				1	29,752	180,000	1	29,752	180,000	
	4. 매 각	토지 건물 기타				1	29,752	180,000	1	29,752	180,000	
	5. 양 여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6. 교환으로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
1997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양여대상 (매각) 수 량	과 표 또 는 평가액	양 여 (매각) 시 기	양여사유 및 근거법령	양 수 자 (매수자)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일단의 수 량						
	임야	지곡면 무장리 산228-1	m ² 29,752	m ² 29,752	천원 180,000	11월		현대정공 주식회사	
계	토지 건물 기타		m ² 29,752	m ² 29,752	천원 180,000				

관련 법규

관 계 법	내 용
<p>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5호 (잡종재산의 매각)</p>	<p>○ 재산의 위치, 형태,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할때.</p>
<p>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</p>	<p>○ 영95조 2항 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(기존공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)</p>
<p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(국.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등)</p>	<p>○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나 양도할 수 있음.</p>